##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63 발의연월일: 2021. 4. 13.

발 의 자:이 영·권영세·김용판

김정재 · 박대수 · 이종배

이주환 • 조명희 • 지성호

추경호 • 한무경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가 자산이 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세계 각국도 데이터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데이터 활용에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유럽연합(EU) 역시 얼마 전 "세계 디지털 전쟁에서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뺏겼다"고 밝히며 데이터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임.

특히,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

성을 제거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데이터 산업 경쟁상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산업 진흥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이에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처리(생성, 수집, 저장, 분석, 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2. "데이터주체"란 처리되는 데이터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 3.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처리 및 거래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4. "데이터 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데이터주체로부터 지정받아 데이터를 처리 또는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 및 데이터산업 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데이터 및 데이터 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공공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2.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4. 데이터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5.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데이터산업과 관련한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 7. 제19조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8. 데이터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차별 데이터산 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①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데이터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3.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2. 데이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한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무국을 둔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 개발 및 연 구·조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응용
  - 2. 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
  -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 4.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 5. 기술 연구인력ㆍ시설 등 연구기반 마련
  - 6. 국제협력의 촉진
  - 7. 그 밖에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준화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데이터산업표준을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연구기관및 공공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기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데이터 수집 및 비식별화 기술에 관한 표준화
  - 2. 데이터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 3. 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의 협력 체계 유지·강화
  - 4. 그 밖에 데이터 기술 기준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

- 체(이하 "표준화사업 실시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데이터 기술 의 표준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화사업 실시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지정일 이후 1년 이상 표준화사업의 수행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 ⑥ 그 밖에 표준화 추진, 표준화사업 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 관련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 기관 또는 단체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지정일 이후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제11조(데이터 처리의 원칙) 누구든지 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데이터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배포 •전송·삭제하는 행위
  - 2. 제13조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회피·제거·변경하는 행위
- 제12조(데이터의 제공) 데이터주체는 자신의 데이터를 국가·지방자치 단체 및 데이터 사업자(이하 "데이터 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 할 수 있다.
- 제13조(데이터 사업자 등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데이터 사업자

- 등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 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데이터 전송 요구권) ① 데이터주체는 데이터 사업자등에 제공한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사업자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전송요구를 받은 데이터 사업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 제15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유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통 및 거래기반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데이터거래소) ①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유통 및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하 "데이터 거래소"라하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전담기관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데이터 품질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등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대상, 인

증기관의 지정 요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데이터 사업자(이하 "중소사업자"라 한 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에 대한 중소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데이터서비스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이하 "데이터서비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데이터서비스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 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1. 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 2. 데이터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 3. 데이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4. 데이터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제21조(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 업에서 대기업과 중소사업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데이터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 2. 데이터 사업자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3. 표준서비스 수준계약 및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 4. 그 밖에 공정한 데이터산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2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9조제5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실시기관의 지정 취소
  -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 3.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제2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 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7조제3항제2호의 위원
- 2.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데이터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전송·삭제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회피·제거·변 경하는 행위를 한 자
- 제2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3조를 위반하여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